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

모든 방과후학교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협조와 양보, 대화와 협력의 원칙 아래 이 협약을 체결하며 약속된 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체결 당사자를 비롯한 방과후학교 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의 준칙에 합의하고 신뢰와 책임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이 행복한 경기방과후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① “방과후학교분야 공공성”이라 함은 ‘방과후학교의 본질인 학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의 본질이 적합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성”이라 함은 ‘교육재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협약체결 당사자”라 함은 각급학교, 학부모, 방과후학교 업체, 방과후학교강사, 교육청 등 방과후학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협약에 서명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협약체결 당사자가 속하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4조(협약 당사자의 역할) 모든 협약 당사자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확산시키며,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 및 협력 증진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협약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공고히 한다.

제2장 초·중·고등학교

제5조(각급학교의 역할) 각급학교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 ① 각급학교는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집행한다.
- ② 각급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심의 절차를 준수한다.
- ③ 각급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④ 각급학교는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 ⑤ 각급학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학부모

제6조(학부모의 역할) 학부모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 ① 학부모는 학생의 다양한 방과후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 ② 학부모는 학생의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③ 학부모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제4장 방과후학교 업체

제7조(방과후학교 업체의 역할) 방과후학교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 ① 업체는 학교 및 강사와의 방과후학교 입찰, 계약, 운영 시 금품수수, 담합 등의 불공정 및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업체는 소속 및 계약된 강사와 합법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 ③ 업체는 체계적인 강사교육과 우수한 교재 교구를 개발하고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④ 업체는 학생에게 사교육비 경감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⑤ 업체는 모든 임직원이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5장 방과후학교 강사

제8조(방과후학교 강사의 역할) 방과후강사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 ①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

래형 방과후학교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 ②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생의 인성을 키우기 위해 상호존중하며 전인교육에 힘쓴다.
- ③ 방과후학교 강사는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우수강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교육청

제9조(교육청의 역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 ① 교육청은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투명사회협약운영위원회를 상시 운영한다.
- ② 교육청은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회계 및 청렴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④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한다.

제7장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제10조(협약의 실효성 확보) 이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운영위원회는 각급학교, 학부모, 방과후학교 업체, 방과후학교강사, 교육청 등 방과후학교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협약체결 당사자 및 구성원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협약내용의 이행·실천·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협약체결 당사자 및 구성원들이 협약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고 협력한다.

제11조(협약의 보완) 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약체결 후 협약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수정·보완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시기) 이 협약은 협약체결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2조 (추가 가입 등) 협약에 참가하지 못한 방과후학교분야의 단체가 협약에 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서 명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한다.

2017년 12월 14일

경기도교육감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

초등학교
행정실장
방과후학교 강사

중학교
학부모

※ 2017년 최초 협약 이후 협약서 수정사항 없음